

서울시보

Hi Seoul
SOUL OF ASIA

서울시 홈페이지 | www.seoul.go.kr

제3083호 2011. 12. 20.(화)



※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

사랑의 종소리

기관의 장		공 람							
선 람									



발행인 |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| 시민소통기획관
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☎731-6113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11-19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2

제2011-198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3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-1987호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12월 20일
서울특별시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시정의 새로운 정책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실·본부·국의 기구를 “1실 8본부 5국”에서 “5실 4본부 5국”을 개편하고, 부서신설 및 사무조정 등 기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실·본부·국 설치 사항을 반영함.

- “경제진흥본부”를 “경제진흥실”로 “복지건강본부”를 “복지건강실”로 “도시안전본부”를 “도시안전실”로 “주택본부”를 “주택정책실”로 “맑은환경본부”를 “기후환경본부”로 “푸른도시국”을 “공원녹지국”으로 개편한 사항 반영

나. 실·본부·국 산하의 부서 설치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함.

- 복지, 일자리, 도시안전, 기후환경, 마을공동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, ‘희망복지지원과, 사회적기업과, 산지방재과, 녹색에너지과, 마을공동체담당관’ 등을 신설하고,
- 업무분야가 축소된 부서 등은 폐지하며,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하여 부서 간 소관업무를 조정하고,
- 기능 조정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.

다.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역사박물관의 하부기관으로 설치함.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참조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 37)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 : 731-6152, FAX : 731-6309, E-mail : sola20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-1988호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12월 20일
서울특별시장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에 따라 직종 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, 본청·사업소간 정원 이관 등 정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디자인 분야 사업의 안정화에 따라 본청의 3급 정원을 1명을 감축하고
- 나.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4급정원 1명을 증원하고,
- 다. 한성백제박물관 개관에 따른 유물확보를 위해 일반직을 상계하여 연구직 2명, 은평병원 발달장애아동 치료분야 보강을 위해 별정직을 상계하여 일반직 1명을 증원하며
- 라.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며 본청·사업소간 정원을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임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(참조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,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(전화 : 731-6152, FAX : 731-6309, E-mail : sola20@seou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※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(<http://legal.seoul.go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